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13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천하람·정성호·이준석

이용우 • 이개호 • 김주영

김교흥 · 강준현 · 황운하

주철현 • 윤종군 • 민병덕

의원(12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브리 핑을 열고 위헌·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내란의 죄를 범 한 것은 물론이고, 대내·외 경제적 여건을 악화시켜 환율, 주식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을 확대했음.

다음날 오전 1시 2분 국회는 재적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고, 몇 시간 뒤 계엄은 최종 해제되었으나,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행 계엄법이 지닌 다양한 허점이 노출되었으며, 계엄법에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다른 법률이나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해 형성된 금지 행위를 군인과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법률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가 계엄을 악용했으며, 2016년

에서 2017년 사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계엄 시도가 폭로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24년 윤석열의 내란을 계기로 드러난 현 행 계엄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이에 계엄 선포·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정비, 계엄사령관의 관장·지 위·감독권의 명확화,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성립 등 계엄법에 대한 전반적 개편을 통해 계엄의 민주성, 정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엄 선포의 절차 개선 및 자동 해제 요구 도입(안 제2조)

- 1) 12월 3일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현행 계엄 제도의 문제점은 계엄의 선포 주체인 대통령이 행정부 내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입법부나 사법부에 의해서 견제받지도 않으며, 위법적인 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할 경우 계엄의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임.
- 2) 그러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사전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승인을 의무화할 경우 회의 소집 지연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선제공격이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수 있는바, 현행 계엄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회 통고·소집 요구

시점을 계엄 선포 후가 아닌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 심의 전으로 개편하고, 헌법 제76조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후 24시간 이내 사후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함.

- 나. 계엄사령관의 관장·지휘·감독권 명확화(안 제7조 및 제8조)
 - 1) 현행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항을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로 한정하고 있고, 계엄 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기관 역시 행정기 관과 사법기관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입법부인 국회는 당연히 계엄 사령관의 관장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계엄 상황에서는 계엄군의 장병 등이 법에 대한 무지 또는 고의적 왜곡으로 위법을 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2) 이에 계엄사령관의 관장·지휘·감독 범위에 입법부인 국회가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실제 계엄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다. 계엄의 해제 절차 정비(안 제11조)

- 1) 현행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가 가결되었을 당시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계엄해제를 지연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함.
- 2) 이에 계엄의 일반 해제와 달리 국회의 요구에 의한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제하도록 개선함. 라.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안 제13조)

- 1) 현행법상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에 대해 관장·지휘·감독할 수 없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금할 수도 없지만, 12월 3일에서 4일 사이 당시 계엄사령관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포고령 위반을 현행범으로 보아 체포 또는 구금하고자 했으며, 일부 계엄군 및 경찰은 체포나구금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출입 및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자 했음.
- 2) 이에 현행 계엄법상 규정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행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완전히 제외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은 물론이고, 압수·수색·동원·정발도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금지하며, 포고령 위반을 현행범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제도상허점을 보완하여, 계엄 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마.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간주 도입(안 제15조 신설)

1) 현행 헌법, 계엄법 및 형법을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계엄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에 해당하여 최고 형벌인 사형이나 무기징역까

지 처벌할 수 있고,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국회법상 처벌 대상이나, 계엄법 법문에 명시된 바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함.

2) 이에 국회의 사무를 관장·지휘·감독하거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압수·수색·동원·정발하거나 국회의원의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을 제한한 경우,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위험한 물건의 휴대, 재물손괴의 폭력을 행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을 모두 내란죄를 성립한 경우로 보아형법상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동시에 그 사유서를 붙여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계엄은 그 즉시 제11조제4항에따라 해제 요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고문·폭행·협박·구속·기망 등이 있었을 때에는 그 동의의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⑧ 이 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엄의 효력 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계엄사령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사무를 관장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없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 중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를 "회복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를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압수・수색・동원・징발하거나 국회의원의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을 제한할 수 없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87

조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며, 동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회의 사무를 관장·지휘 ·감독하거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자
- 2.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압수・수색・동원・징발하거나 국회의원의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을 제한한 자
- 3.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위험한 물건의 휴대, 재물 손괴의 폭력을 행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

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⑤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후단</u>	
<u>신설></u>	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
	는 동시에 그 사유서를 붙여 국
	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언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언
	지 못한 계엄은 그 즉시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해제 요구된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u>구하는</u> 과정에서 고문·폭행·
	협박・구속・기망 등이 있었을
	때에는 그 동의의 효력이 발생
	<u>하지 아니한다.</u>
<u> <신 설></u>	⑧ 이 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지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 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 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u>회복되</u> 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 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신 설>

③ 계엄사당관은 어떠한 경우에
도 국회의 사무를 관장하지 아
니하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없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①
다만, 국회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회복된
<u>경우</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
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u>국회의원의</u>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신 설>

-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령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 회의원을 체포・구금・압수・ 수색・동원・정발하거나 국회 의원의 거주・이전・언론・출 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 을 제한할 수 없다.
-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87조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 며, 동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회의 사무를 관장 ·지휘·감독하거나 국회의원 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자
 - 2.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압수·수색·동원·징 발하거나 국회의원의 거주· 이전·언론·출판·집회·결 사 또는 단체행동을 제한한 <u>자</u>
 - 3.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 침입·퇴거불응, 위험한 물건 의 휴대, 재물손괴의 폭력을 행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국회 의원이나 국회공무원의 회의 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 해한 자